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169
- 발의자 : 김동욱 의원(찬성자 14명)
- 발의일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 : 2025년 11월 04일

2. 주문

-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이하로 하향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 청소년의 교화·재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사회·학교·가정이 연계되는 예방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3.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13~14세 미만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 아동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어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며, 일부 청소년은 이를 악용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폭행, 갈취, 성범죄 등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제도 보완이 시급함.
- 국제사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향에 우려를 표하지만, 국가별 사회 현 실과 범죄 양상은 상이하며, 우리 사회는 범죄 저연령화에 대응한 실효적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이하로 하향하고, 청소년 교화·재활 및 피해자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년법」

5.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6. 검토의견

가. 건의안 개요

- 본 건의안은 최근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와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치료·재활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지역사회·학교·가정이 연계되는 예방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건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 「형법」(제9조)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년법」(제2조 및 제4조)도 14세를 기준으로 범죄소년(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형별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형별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구분하고,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결정할 수 있고, 범죄 소년은 보호처분이 원칙이나, 형(刑)을 보호처분과 병행하여 선고할 수 있음.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 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별 법령

<p>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p> <p>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p> <p>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p> <p>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p>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p> <p>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소년의 분류〉

유형	대상자 (법 제4조제1항각호)	형사처벌	보호처분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우범소년	다음 가·나·다의 사유가 있고(우범사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우범성) 10세 이상인 소년(19세 미만)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용받으며, 제32조에 규정된 10개의 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됨.

* 범죄소년은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 규정(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제3장 형사사건 규정(형사처벌)도 적용.
 다만,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받게 됨(제50조 등).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비교 〉

구 분	형사처벌	보호처분
종류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 9개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등 10개 처분
절차상 특징	법원의 일반 형사절차	법원 소년부가 검사 관여 없이 진행
근거 법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소년법」
전과 유무	전과가 남음	전과가 남지 않음

-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더욱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14세)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14세)을 낮추자는(14세 → 12세 또는 13세) 입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촉법소년 관련 주요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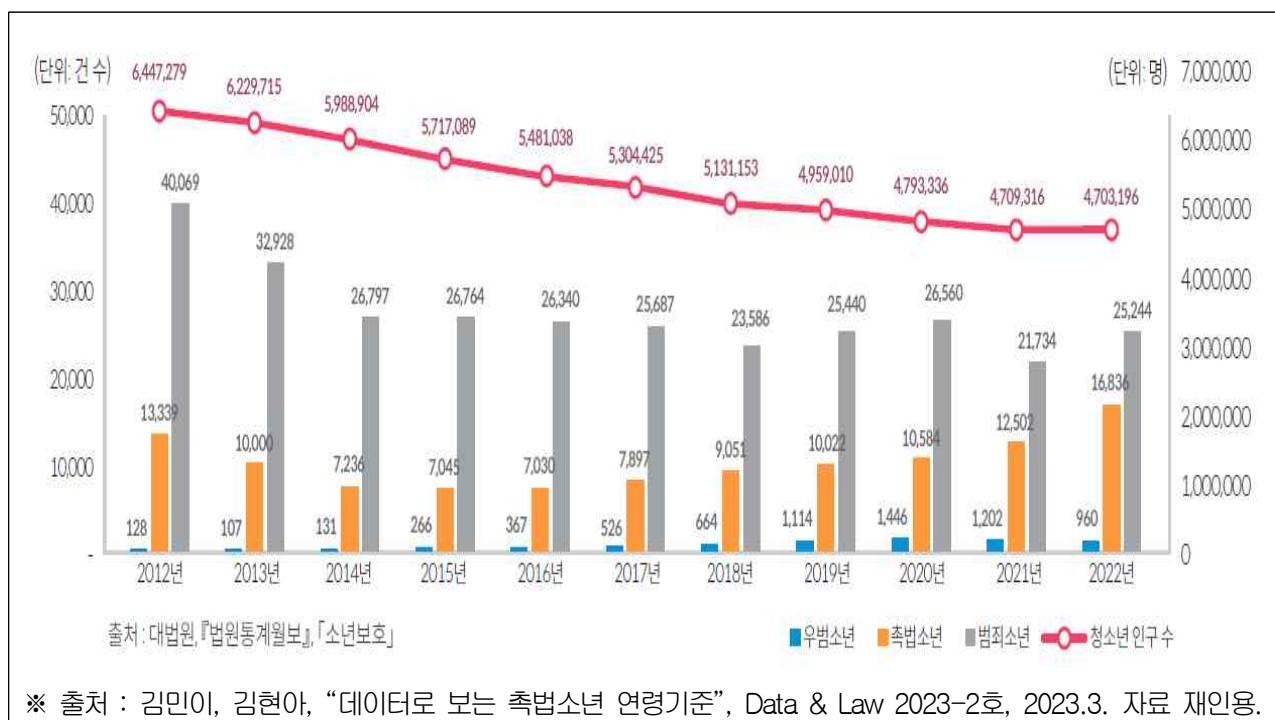
연번	사건명	범죄 요지
1	촉법소년의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 '18. 2.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군 등 2명에게 성폭행 당한 후 극단적 선택'
2	문지마 살인미수 사건	▶ '15. 6. 13세의 촉법소년이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로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3 4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 '22. 7.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
		▶ '22. 8. 중학생 B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요치 8주 중상을 가하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여 점원 폭행'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2022년 10월 26일자 재인용.

-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법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4세 미만 소년의 보호처분 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소년범죄 접수현황 〉



〈 보호처분 소년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14세 미만	16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
2019	24,131	3,827(15.9)	7,393(30.6)	8,917(37.0)	3,994(16.5)
2020	25,579	3,465(13.6)	8,088(31.6)	9,852(38.5)	4,174(16.3)
2021	22,144	4,142(18.7)	6,804(30.7)	7,849(35.5)	3,349(15.1)
2022	24,933	5,245(21.0)	8,176(32.8)	8,124(32.6)	3,388(13.6)
2023	30,253	7,175(23.7)	9,685(32.0)	9,725(32.2)	3,668(12.1)
2024	30,989	7,294(23.5)	9,672(31.2)	10,241(33.1)	3,782(12.2)

※ 출처 :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5년 9월, 912면.

- 둘째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총법소년 범죄유형은 절도가 49.5%로 가장 많고(3만2,672명), 폭력(1만5,808명, 24.0%), 기타(1만4,733명, 22.3%), 강간·추행(2,445명, 3.7%), 방화(263명), 강도(54명), 살인(11명) 등으로, 강간·추행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특히 마약은 3배(15명에서 50명) 이상 증가).

〈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법소년 현황 〉

구분	총계	강력범죄					절도	기타 특별법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폭력		
2019년	8,615	1	7	357	32	2,148	4,536	1,534
2020년	9,606	4	14	373	49	1,972	5,123	2,071
2021년	11,677	2	11	398	68	2,750	5,733	2,715
2022년	16,435	1	15	557	58	4,075	7,874	3,855
2023년	19,653	3	7	760	56	4,863	9,406	4,558
합계	65,986 (100.0%)	11 (0.0%)	54 (0.1%)	2,445 (3.7%)	263 (0.4%)	15,808 (24.0%)	32,672 (49.5%)	14,733 (22.3%)

* 출처 : 서지영 의원실(국민의힘, 부산동래구) 보도 자료, 2024.10.22. 재인용

〈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소년 마약범죄 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범죄소년	72	132	183	201	786
총법소년	2	-	1	15	50

* 출처 : 서지영 의원실(국민의힘, 부산동래구) 보도 자료, 2024.10.22. 재인용

- 셋째,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호주는 형사책임연령이 10세이고,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형사책임연령이 12세, 프랑스는 13세로 하고 있고, 미국은 7세부터 13세까지 각 주마다 형사책임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기준 〉

연령	국가
10세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12세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스코틀랜드), 멕시코 등
13세	프랑스
14세	대한민국, 독일,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평가리 등
15세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 미국은 7세부터 13세까지 각 주마다 상이함.

※ 출처 : 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https://archive.crin.org/en/home/ages.html>), Minimum ages of criminal responsibility around the world 참조.

- 마지막으로, 최근 촉법소년 연령 설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응답이 94.2%로 조사됨.
- 찬성하는 이유로는 ‘촉법소년 제도 악용’(51.6%),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40.9%), ‘예방 효과가 기대’(7.1%), 등으로 나타났고,
- 반대하는 이유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50.0%), ‘소년범의 교화 및 재사회화의 기회 부여’(32.8%), ‘지나친 인권 침해 우려’(15.5%), 등으로 나타났음.

1)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토>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온라인 조사한 결과임. 뉴스토마토, 국민 94.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2025년 4월 10일 참고.

- 2022년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2022년 10월 26일)”을 발표하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 (2022년 12월, 의안번호 2119216)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이와 유사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발의하였으나, 대부분 임기만료폐기됐으며, 2024년 6월(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3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임.

〈 21~22대 국회 제출된 「형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및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 요 내 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853) 김예지 의원	2020.09.14.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 다스림.
	(2107847) 전용기 의원	2021.02.02.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
	(2110765) 김병욱 의원	2021.06.21.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
	(2112623) 김용민 의원	2021.09.17.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 다만, 형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제외.
	(2115136) 김회재 의원	2022.04.07.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조정,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히 다스리도록 함.
	(2115376) 허은아 의원	2022.04.22.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 10세 이상인 자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강력 범죄 및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히 다스림.
	(2116151) 홍석준 의원	2022.06.27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
	(2119216) 정부	2022.12.28.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49) 전용기 의원	2021.02.02.	족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함.
	(2110766) 김병욱 의원	2021.06.11.	족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함.
	(2112644) 김용민 의원	2021.09.23.	족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함.
	(2114464) 서영교 의원	2022.01.18.	족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함. 또한,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범하였을 때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
	(2114932) 이종배 의원	2022.03.23.	족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함.

	(2115135) 김회재 의원	2022.04.07.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u>13세로</u> 함.
	(2115377) 허은아 의원	2022.04.2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u>12세로</u> 함.
	(2119215) 정부	2022.12.28.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u>13세로</u> 함.
	(2203853) 이종배 의원	2024.09.10.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u>12세로</u> 함.
	(2204235) 서영교 의원	2024.09.24.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u>13세로</u> 함.
	(2204380) 한지아 의원	2024.09.26.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u>13세로</u> 함.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2025년 11월 24일 검색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흥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악용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함께 보호처분 중심의 현행 촉법소년 제도를 보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재활 프로그램 강화, 피해자 보호 제도 등)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의미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요구(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 포함)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종합해 보면,
 - 첫째, 13세 아동이 전과 기록을 갖게 될 경우, 사회 복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고,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학교생활 또는 사회 재적응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년을 교육과 보호의 강화가 아닌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둘째,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소년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는 없으며, 대중의 분노가 높아진 사회적 불안에 따른 신속한 입법은 범죄 감소 효과도 없이 소년의 재활 가능성만 훼손하는 ‘이중적인 정책 실패’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²⁾
- 넷째,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년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없이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

다. 종합 의견

- 본 건의안은 현행 「형법」과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14세)과 촉법소년 연령 상한(14세)을 하향하고, 보호처분 중심의 현행 촉법소년 제도를 청소년 범죄 예방,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재활 프로그램 강화,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질적인 보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임.
- 촉법소년 연령 상한(14세)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음에 따라 촉법소년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개정(14세 → 12세 또는 13세)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범죄 증가 억제와 시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됨.

2) 국가인권위원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2022년 9월 26일 참조.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학계 등에서 청소년의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등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본 건의안의 취지와 제안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건의안 중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이하로 하향”은 실질적 개정 효과가 없는바, 안 의결주문 중 “13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 안	수정의견
○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 미만에서 <u>13세</u> <u>이하로</u> 하향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 미만에서 <u>13세</u> <u>미만으로</u> 하향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채태준
------	-----	-------	-----